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유효기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직인